

의안번호	2202639
의 퇴 인	김미애 의원
회 답 일	2024. 8. 8.
추계번호	24F2372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법인세수는 2026년 3,989억원, 2030년 5조 5,83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1조 125억원(연평균 4조 2,02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(안 제55조 제1항)	-3,989	-47,111	-50,196	-52,995	-55,834	-210,125	-42,025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
1	안 제55조 제1항 (세율)	○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<현행> <table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2억원 이하</td><td>9%</td></tr><tr>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<td>19%</td></tr><tr>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1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4%</td></tr></table> ⇒ <개정안> <table>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<tr><td>5억원 이하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<td>20%</td></tr><tr><td>3천억원 초과</td><td>22%</td></tr>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억원 이하	9%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3천억원 초과	24%	과세표준	세율	5억원 이하	10%	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0%	3천억원 초과	22%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9%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9%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1%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4%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이하	10%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20%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22%																	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5조 제1항(법인세율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상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추계하며,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함
 -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 수는 2023년 신고 수준이 향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 - 1법인당 산출세액은 2023년(2022년 귀속소득)을 기준으로,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3.10)한 법인세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중간예납액이 총부담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간예납 중 가결산으로 신고한 비율이 최근 5개년(2019~2023년)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
 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19~2023년 평균 34.8%
 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19~2023년 평균 23.9%
- 개정안이 2024년 말 통과될 경우,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제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집계함
 - 법인세 확정신고·납부에 따라 2026년 귀속소득에 대한 효과는 2027년 발생하지만, 중간예납을 통해 납부할 세액의 일부가 2026년 당해 발생할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(1) 추계방법

□ (법인세 신고현황)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, 과세표준, 1법인당 과세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

[표 2] 지역별 법인세 신고 현황: 2023년 신고법인 기준(2022년 귀속)

과세표준	기업 수(개)	과세표준(억원)	1법인당 과세표준(억원)
2억원 이하	357,809	202,429	0.6
3억원 ~ 5억원 이하	67,161	209,754	3.1
5억원 ~ 200억원 이하	58,077	1,222,606	21.1
200억원 ~ 3,000억원 이하	1,959	1,201,372	613.3
3,000억원 초과	137	1,754,495	12,806.5

주: 과세표준이 “0”이거나 “음수”인 기업 제외한 수치임

자료: 국세청의 국세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(1법인당 산출세액) 1법인당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계

- (과세표준 전망) 2026년 귀속 1법인당 과세표준은 2022년 귀속 1법인당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법인세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 - ('23년 귀속) △5.2%, ('24년 귀속) 10.5%, ('25년 귀속) 8.3%, ('26년 귀속) 7.5%

- (1법인당 산출세액) 2026년 귀속 1법인당 과세표준(전망)에 개정안에 따라 변경되는 과세표준별 세율 및 법인세 증감률 전망을 적용하여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을 추계
 - ('27년 귀속) 6.6%, ('28년 귀속) 5.9%, ('29년 귀속) 5.4%, ('30년 귀속) 5.1%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변화

과세표준	현행	개정안
2억원 이하	9%	10%
3억원 ~ 5억원 이하	1,800만원	
5억원 ~ 200억원 이하	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9%)	5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%)
200억원 ~ 3,000억원 이하	37.8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1%)	
3,000억원 초과	625.8억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%)	599.5억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%)

[표 4]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0.01	0.01	0.01	0.01	0.01
3억원 ~ 5억원 이하	-0.14	-0.15	-0.16	-0.17	-0.18
5억원 ~ 200억원 이하	-0.04	-0.05	-0.05	-0.05	-0.05
200억원 ~ 3,000억원 이하	-3.8	-4.0	-4.3	-4.5	-4.7
3,000억원 초과	-278.5	-297.0	-313.6	-330.5	-347.3

□ (전체 산출세액) 1법인당 산출세액 변화분에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 (2023년 신고기준)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 추계

[표 5] 전체 산출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2,468	2,632	2,779	2,928	3,077
3억원 ~ 5억원 이하	-9,580	-10,216	-10,788	-11,369	-11,946
5억원 ~ 200억원 이하	-2,520	-2,687	-2,837	-2,990	-3,142
200억원 ~ 3,000억원 이하	-7,396	-7,888	-8,329	-8,777	-9,223
3,000억원 초과	-38,158	-40,692	-42,970	-45,283	-47,583

□ (부담세액) 앞서 추정 한 산출세액 변화분에 공제·감면 등 효과를 고려 하기 위해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(2023년 신고기준)을 적용

- 2023년 신고기준 법인의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은 84.9%

[표 6] 비수도권 소재 법인의 전체 부담세액 변화(귀속연도 기준)

(단위: 억원)

과세표준	2026	2027	2028	2029	2030
2억원 이하	2,095	2,234	2,359	2,486	2,612
3억원 ~ 5억원 이하	-8,132	-8,672	-9,158	-9,651	-10,141
5억원 ~ 200억원 이하	-2,139	-2,281	-2,409	-2,538	-2,667
200억원 ~ 3,000억원 이하	-6,279	-6,696	-7,070	-7,451	-7,830
3,000억원 초과	-32,391	-34,543	-36,476	-38,439	-40,392
합계	-46,846	-49,958	-52,754	-55,593	-58,418

□ (납부시점 배분) 법인세가 실제 국고에 귀속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세수 효과 기간을 반영

-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당해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8월 중간예납과 다음 해 3~4월 확정신고를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
- 중간예납세액 비율과 가결산 비율 감안 시, 세수효과의 8.5%(중간예납세액 비율×가결산 비율)가 당해 귀속연도에 영향을 줌
 - 총부담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이 차지하는 비중: 2019~2023년 평균 34.8%
 - 중간예납 납부금액 중 '가결산 기준' 비율: 2019~2023년 평균 23.9%

[표 7] 법인세 납부시점 배분

납부시점 귀속 사업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2026	(중간예납)					
2027		(중간예납)				
2028			(중간예납)			
2029				(중간예납)		
2030					(중간예납)	

(2) 추계결과

-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법인세수는 2026년 3,989억원, 2030년 5조 5,834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21조 125억원(연평균 4조 2,02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(안 제55조 제1항)	-3,989	-47,111	-50,196	-52,995	-55,834	-210,125	-42,025

주: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, 제시된 기간 이후에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